

심사보고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안건명	페이지
1.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21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6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혈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9
8.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4
9.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0
10.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56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1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1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2. 2.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2. 11. 18.
-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11. 28.)
상정, 심사, 보류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2. 12. 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출연대상 : 마포복지재단
- 2) 출연 필요성
 - 마포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보통재산 출연 지원

- 지역자원 총량 확대를 위한 모금·배분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역복지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3) 출연금액 및 내용

- 출연금액 : 1,525,564천원
- 출연내용 : 재단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지원
 - 기본재산 : 1,000,000천원
 - 보통재산 : 525,564천원

(인건비 371,280천원, 운영비 131,084천원, 사업비 23,200천원)

【 출연금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세부내용	비고
합계	1,525,564		
복지재단 기본재산	1,000,000	· 기본재산 적립	
복지재단 보통재산	525,564		
복지재단 운영	인건비	371,280	· 기본급여,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운영비	131,084	· 사회보험료, 급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 광열비, 도서인쇄비, 회의운영비, 소모품비 등
	사업비	23,200	· 복지재단 홍보 및 나눔활성화 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초기사업비

※ 출연동의안 구의회 의결 후,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의·결정

3. 검토보고 (김동원 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마포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포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규정에 의거 예산의 출연이 가능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조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

○ 재단 출연금액 및 내용

- 2023년도 출연금은 15억 2,556만 4천원으로 복지재단 기본재산 10억원과 보통재산 5억 2,5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본재산은 4년 동안 50억원 출연을 목표로 2021년에 최초로 20억원 출연, 22년 5억에 이어 내년에도 1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 예정이고,
- 보통재산은 마포복지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7명) 3억 7,128만원, 운영비 1억 3,108만 4천원, 사업비 2,320만원 등 총 5억 2556만 4천원을 산정하여 출연할 예정임.
- 참고로, 2022년 기본재산 출연이 10억에서 5억으로 예결위에서 삭감됨에 따라 2024년까지 당초 목표 50억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마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본재산	5,000	2,000	1,000	1,000	1,000

〈 마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 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본재산	2,500	2,000	500		

- 향후 마포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 11월 2일 출범한 마포복지재단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설립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에서 재단 설립 시 우려하였던 사항과 집행부에서 요구하였던 재단설립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년 늘어나는 불요불급한 인건비, 운영비를 최소화 하여 절감된 기금을 우리 구민에게 한층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 마포복지재단 설립 개요

2. 관계법령

[설립개요]

마 포 복 지 재 단 설 립 개 요

- 명 칭 : 마포복지재단
- 설립형태 : 자치구 출연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공익법인
- 설립주체 : 마포구
- 설 립 일 : 2021년 11월 2일
- 기본재산출연 : 50억원
 - '21년 20억 출연, 이후 매년 10억씩 3년간 출연 예정
 - ※ 시 설립허가 기본재산 최저기준 : 20억원
- 운영재원 : 구 출연금, 이자수입, 후원금, 기타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구출연금)
- 조직 및 인력
 - 조 직 : 이사회, 감사, 사무국
 - 임 원 : 이사 15명 이내, 감사 2명
 - 직 원 : 2개 팀 7명
- 주요사업 (우선순위)
 -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모금·배분)
 -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 사업
 - 지역복지 역량 강화 및 복지공동체 강화
 - 사회복지시설 운영 · 관리
 - 지역복지 조사·연구 정책개발 등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2. 11. 18.
-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11. 28.)
상정, 심사,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생활보장과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기금의
준속기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제1조(목적)의 인용조문 정비
 - 제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을 ‘제18조의 7’로 변경
- 2) 제3조(기금의 용도)의 상위법령 조문의 재기재에 불과한 조항 수정 및 삭제
 - ‘제3조제1호~제11호’를 ‘제3조제1호~제3호’로 변경
 - ‘제3조제1호~제7호, 제9호~제10호’ 삭제

- ‘제3조제8호, 제11호’는 유지하여 ‘제3조제2호, 제3호’로 올림
- 3)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
- 4) 제3조 수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정비 : 제6조(지원대상), 제8조(사업자금 대여), 제10조(신용보증)
 - 제6조제5호 : ‘제3조제11호’를 ‘제3조제3호’로 변경
 - 제8조제1항 : ‘제3조제2호’를 ‘영 제26조의4제4호’로 변경
 - 제10조 : ‘제3조제4호’를 ‘영 제26조의4제7호’로 변경
- 5) 제15조(시행규칙) 삭제
 - 상위법령 반복내용으로 불필요한 규정 삭제

3. 검토보고 (김동원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기금 조례로서 2022. 11. 1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92호로 제출되어, 2022. 11.18.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개정 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반복, 중복,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 등의 재정비로 미비점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목적) 중 “「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 안 제3조(기금의 용도)의 상위 법령 조문 중 ‘제3조제1호~제11호’를 ‘제3조제1호~제3호’로 변경, ‘제3조제1

- 호~제7호, 제9호~제10호' 삭제, '제3조제8호, 제11호'는 유지하여 '제3조제2호, 제3호'로 올려 불필요한 조항을 수정, 변경, 삭제 하였으며
- 안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의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3조 수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제6조(지원대상) 제5호 중 '제3조제11호'를 '제3조제3호'로, 제8조(사업자금 대여) 제1항 중 '제3조제2호'를 '영 제26조의4제4호'로, 제10조(신용보증) 중 '제3조제 4호'를 '영 제26조의4제7호'로 변경 하였으며
 - 안 제15조(시행규칙)는 상위법령 반복내용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 조항 정비 및 기금 존속기한 조항 폐지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법령 정비기준 및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조례에 법 취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히 보완·반영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타 관련 조례도 면밀히 살피어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 하여 일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 관련법규**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1. 7.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4. 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 4. 20.>]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 6. 12., 2015. 4. 20., 2022. 1. 28.>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전문개정 2011. 9.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불임)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2-117관련
----------	----------

제안년월일: 2022. 11. 28.

제안자: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이외의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p>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22. 차해영 의원 외 9명
- 나. 회부일자 : 2022. 11. 24.
-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2. 11.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차해영 의원

가. 제안이유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며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안 제7조 제3항)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2) 자문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검토보고 (김동원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며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부터 마포구 장기요양 요원 보호를 위하여 권리보장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임

○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사항을 보완하고자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현장에서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음.

○ 종합의견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한 지원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전 등에 대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관련법규

[관련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동 단위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22. 차해영 의원 외 9명
- 나. 회부일자 : 2022. 11. 24.
-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2. 11.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차해영 의원

가. 제안이유

스토킹을 미연에 방지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시기에,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3조 ~ 제4조)
- 3) 협력체계의 구축 등과 교육 및 홍보(안 제5조 ~ 제6조)

4) 비밀누설의 금지와 시행규칙(안 제7조 ~ 제8조)

3. 검토보고 (김동원 전문위원)

가.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의 근거 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여 위반 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스톱킹에 대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책무가 대두됨
-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스톱킹 범죄 방지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여성·청소년 안전귀가 서비스인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등과 함께 2023년에는 스톱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구에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적절하다 하겠음.

나. 조례 조문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명시와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과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비밀누설의 금지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조문 검토사항으로

- 안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서 스토킹 예방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3항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시 구의회의 동의를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안 제4조 지원사업 추진 시 비용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우리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2021년 10,000천원, 2022년 32,000천원의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기에 조례 제정과 함께 최소한의 구비 예산도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안 제8조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규칙도 함께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종합 의견

- 이상의 제정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이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중심의 규정이고 현재 근거 법령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1. 관련법규

2.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관련법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톱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2.11. 8>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참고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및 진행현황
1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2022.10.17. 제정 -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행(2023년)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사업 추진 중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사업 (CCTV 모니터링 및 안심장비 지원) 지속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양천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연계 등 안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2023년 예산에 반영, 경찰과 MOU 안심장비 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예정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3년 예정 안심홈도어 사업 추진 계획 (구비)
8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2	성남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3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4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5	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6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8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9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19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8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9	경기도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19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21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원회 회부(9.1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8.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2. 11.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어르신동행과장

가. 제안이유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식사 및 영양 취약계층인 만75세이상 어르신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2) 지원대상 및 급식장소(안 제3조 ~ 제4조)
- 3) 운영 및 운영자 모집(안 제5조 ~ 제6조)
- 4) 지도점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제8조)

3. 검토보고 (김동원 전문위원)

가.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의 근거 규정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로 결식 및 영양결핍 우려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우리구 어르신들의 돌봄확대가 필요한 시기에 무료급식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적절하다 하겠음.

나. 조례 조문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명시와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급식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운영 및 운영자 모집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조문 검토사항으로

- 안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60세 이상 노인 중 만75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어 무료급식 지원계획시 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제공받는 노인은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은 적정합니다.

마포구 노인기본 현황(2022.9.31. 기준)

(단위 : 명)

전 체 인구수	노인인구수(65세이상)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75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362,104	54,599	22,948	31,651	24,243	13,168	3,657	9,476	4,549

-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에 의하면 안 제3조 지원대상과 안 제5조 운영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첫 해인 2023.1월부터 12월까지 무료급식센터를 운영하면 급식비, 인건비, 운영 비 등이 구비 7억 6,656만 6천원이 소요되고, 총비용이 2023.1월부터 2027.12월까지 209억 3,47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외부 후원 및 모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 안 제6조의 운영자 모집 시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사전에 마포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 제7조의 지도점검의 경우 무료급식의 규모가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재료 관리 및 위생관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 제8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자원봉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종합 의견

- 이상의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7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에 근거한 바, 전체적으로 조례 체계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시행 초기에 선택적 지원의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건강한 노인의 삶을 지원하는 노인 급식 지원사업의 민원이 발생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아울러 비용추계에 의하면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평균 약 40 억원 총 209억원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구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정기적 자원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등의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1. 관련법규

2. 비용추계서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 제7조(건강증진)** ①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①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이하 “취약계층 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③구청장은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제3조(지원대상), 제5조(운영)

나. 수입발생 요인 :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3. 1. ~ 2027. 12.(60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	-	-	-	-	-
	시비보조금	-	-	-	-	-	-
세출	구비보조금	766,560	2,578,600	4,220,900	5,863,200	7,505,500	20,934,760
	소계(b)	766,560	2,578,600	4,220,900	5,863,200	7,505,500	20,934,760
□총비용(b-a)		766,560	2,578,600	4,220,900	5,863,200	7,505,500	20,934,760

- 비용 : 급식비, 인건비, 운영비 등 (1일 식단단가 4,000원, 주6일)

4. 재원조달 방안

▶ 마포구 복지재단을 통해 후원금(1인1구좌 펀드) 모금 지속

- 후원금 목표액 : 총사업비의 30% 목표

▶ 시·구공동협력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지원 및 시사업으로 전환 추진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김형신
연락처	02-3153-885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8.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2. 11.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어르신동행과장

가. 제안이유

노인복지 기금의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목적성을 상실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 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

3. 검토보고 (김동원 전문위원)

- 본 조례 폐지안은 2022. 11. 1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114호로 제출되어, 2022. 11.18.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조례 폐지 사유는 기금의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고 기금조성의 목적성이 상실되고 이자율도 저조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으로 재정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따른 장·단점

구 분	장점	단점
기금 존속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 활용으로 예산外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가능 - 단년도 사업으로 필요한 내용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금리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어려움 · 이자內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만 가능 · 기금관리 및 심의 등 행정력 과다
기금 폐지시 (일반회계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으로 사업의 활성화 도모 · 장기과제 추진 시 지속성 확보 · 집행절차 간소화로 효율적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內 사업만을 수행하여 비탄력적 - 예산外 필요한 사업 수행 곤란.

-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노인 복지향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조례 폐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관련법규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8.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2. 11.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장애인동행과장

가. 제안이유

장애인 이동을 위한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와 센터의 운영방법 등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2)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안 제3조 ~ 제4조)
- 3) 수리비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4)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5)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6)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 (김동원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2022. 11. 15. 마포 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125호로 제출되어, 2022. 11.18.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개정 취지는 장애인 이동을 위한 휠체어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 및 센터 운영 개선방법 등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폐지로 인용조문 정비로
 - 제2조(정의)제2호 “장애인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기기 품목 중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방법 개선으로
 - 제3조(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제2항 “센터”를 “센터운영을 위해”로 “위탁하여 운영”을 “지정 또는 위탁”으로 변경하고
 -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제1호 “위탁·운영하는”을 “운영하는”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지정 및 위탁 비교

지정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신속·능률적인 추진 ✓ 1년 단위 협약(지방보조금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추진 기간 소요(2~3개월) ✓ 3년 단위 위탁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제4조(위탁 및 운영·수리비용 지원)을 제4조(운영·수리비용 지원)으로 변경하여 제1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삭제 하였습니다.
-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변경 내용과 효율적인 마포보장구 수리센터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우리구 조례에 법 취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히 보완·반영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1. 관련법규

2. 마포보장구 수리센터 현황

[관련법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마포보장구수리센터 현황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위 치 : 성산로4길35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마포보장구수리센터”
- 운영기관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대표 : 김명규)
- 위탁기간 : 2022. 2. 1. ~ 2023. 4. 30.(1년 3개월)
- 사업대상 :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휠체어 이용 장애인
- 사업내용 :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대여, 세척, 상담,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사업)
- 사업예산 : 82,400천원(시비 12,400천원 구비 70,000천원)

□ 운영 및 지원 세부 내용

○ 지원대상 및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300천원 한도
- 일반장애인 : 연 200천원 한도

○ 지원내용

구분	운영일	수리수행		운영시간	수리장소	비고
센터 수리	상시 (월~금)	전문수리기사		09:00~18:00	마포보장구 수리센터	수리센터
	첫째주 목요일	전문 수리 업체	케어존	13:00~16:00		센터-업체 계약체결
	둘째주 목요일		힐로피아			
출장 수리	상시 (월~금)	수리기사 및 업체		09:00~18:00	신청인 자택	
순회 수리	동별 월1회	자전거수리 용역업체		10:00~17:00	각 동별 지정장소	교통행정과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사업 협조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위탁 경과

- 2006. 3. :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유·무상 수리 지원 계획 수립 (1년 단위 협약)
- 2018. 11. :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9. 1.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과 최초 위탁 협약 ('19.1.1~'21.1.31)
- 2021. 12. : 현 수탁자와 재계약 ('22. 2. 1 ~ '23. 4. 3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1.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2. 11. 18.
-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2. 11.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장애인동행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마포복지목욕탕에 대하여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
- 2)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3. 5. 1. ~ 2025. 4. 30.(2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위탁 필요성
 -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노인 등에게 건강과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내외 다양한 네트워크와 서비스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업무 효율성 제고
-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마포복지목욕탕
 - 위치: 마포구 월드컵로 205(성산동) SH공사 성산아파트 임대상가 24호
 - 시설규모: 면적 455.85㎡(전용 299.04㎡, 공용 156.82㎡)
 - 임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무상 임대사용(2009.1.6.~현재)
- 소요예산 : 총258,084천원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산출내역	비고
계	258,084		
마포복지목욕탕 운영	258,084	- 운영비 118,854 - 운영비 108,730 - 시설비 30,500	구비

* 2023년 최저임금 및 시설 소요예산 반영

3) 추진일정

- '22. 12월 :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수립
- '23. 1월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및 수탁기관 선정
- '23. 2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3. 5월 : 위탁운영 개시

3. 검토보고 (김동원 전문위원)

- 본 안건은 2022. 11. 1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 22-135호로 제출되어, 2022. 11. 18.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사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현 마포복지목욕탕 운영관리 주체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위탁법인 운영사무는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과의 위탁기간이 '23. 4. 30.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복지목욕탕 시설 운영, 인력운영 관리일체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조례 규정에 따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수탁 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 위탁 운영체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1. 복지목욕탕 운영현황

2. 관련법규

[복지목욕탕 운영현황]

○ 복지목욕탕 이용자 및 이용현황

- 2020. 2. 3.~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운영 중단
- 2021.11.25.~: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운영 재개

연도	계(명)	일반 대상	할인대상							
			소 계	장애인	노인	수급자	유공자	한부모	보호자	미취학
2021	435	13	422	33	358	28	0	0	3	0
2020	4,380	143	4,237	81	4,042	92	0	0	20	2
2019	39,765	1,629	38,136	1,085	35,762	997	12	7	239	29

연도	운영일수(일)	일평균이용자(명)
2021	32	13.5
2020	24	182.5
2019	270	147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임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05(성산동) SH공사 성산아파트 임대상가 제 24호에 설치한다. <개정 2014.10.16>

② 목욕탕 명칭은 "마포복지목욕탕"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목욕탕 운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구청장은 목욕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제16조(위탁계약)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내용

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0.16>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10.1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 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3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22. 장정희 의원 외 9명
- 나. 회부일자 : 2022. 11. 24.
-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2. 11. 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장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 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8개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아동복지법 등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1조)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2조)

- 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3조)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4조)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5조)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6조)
-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7조)
-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8조)

3. 검토보고 (김동원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2022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20건, 규칙 2건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일괄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비된 8건의 자치법규를 추가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임.

○ 일괄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로

제2조 중 “「아동복지법」 제6조”를 “「아동복지법」 제14조”로 제8조제2항 중 “아동청년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아동돌봄팀장”을 “담당 팀장”으로 하며.

-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161조”로 하며
- 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의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으로 하며
- 안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하며
- 안 제5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하며
- 안 제6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하며
- 안 제7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2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하며
- 안 제8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의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으로 총 8개의 자치법규 조례를 일괄 개

정하였습니다.

○ **종합의견**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법령 정비기준 및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히 보완·반영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타 관련 조례도 면밀히 살피어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일괄 개정예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 관련법규**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생략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1. 3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2. 11. 18.
-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2. 11. 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아동청소년과장

가. 제안이유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 를 마포구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되고, 재계약 관련 절차 진행 중에 수탁기관에서 재계약 포기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에 관하여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

※ 현 수탁법인 (학)명지전문대학 내부사정으로 재계약 포기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2)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2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위탁 필요성

-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 및 민간단체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제고

○ 위탁시설 현황

구 분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재지	마포구 희우정로 77 상가동 1층(망원동)
규모	226.23㎡
시설 설비	사무실(1), 상담대기실(1), 집단상담실(1), 개인상담실(3), 교육실(1)
센터전경 및 위치	

○ 소요예산 : 총994,500천원(국비 10%, 시비 22%, 구비 68%)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 고
합 계	994,500	807,000	76,860	110,640	
2023년	494,250	400,500	38,430	55,320	인건비 상승률 반영
2024년	500,250	406,500	38,430	55,320	"

* 인건비 산정 : 센터장1명, 팀장2명, 팀원3명(서울시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운영비 내역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등

<참고>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 고
2022년	484,000	385,250	38,430	60,320	

3) 추진일정

- '22. 11. 7.~11. 28. : 민간위탁운영체 선정방침 수립 및 공개모집
- '22. 11. 29.~12. 16.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22. 12. 21. : 위·수탁 협약 체결

3. 검토보고 (김동원 전문위원)

- 본 안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마포구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현수탁기관인 (학)명지전문대학의 재계약 포기로 위탁방법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현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사무는 위탁방법 변경에 따라

새로운 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당초 3년에서 2년,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
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
니다.

- 따라서, 본 재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
니다.

※ 참고자료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8.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2.1.)

상정, 심사, 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자원순환과장

가. 제안이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하고, 적절하지 않은 단어 및 표현을 수정하여 법령에 맞는 용어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2)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위원회 조항 재정비 및 근거법 명시(안 5조의 2)
- 3) 별지 제2호서식 기금출납부 변경 및 정비
- 4)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 적절하지 않은 단어 및 표현 수정 및 문맥 재정비

3.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재활용품의 판매수입과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기금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때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아울러,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을 준용하여 문구 및 문맥을 재 정비하고자 제안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의 설정과 연장에 대한 근거 법령의 직접적인 명시를 삭제하고 현행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 까지 5년 연장함.
- 안 제5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의 위원회 심의사항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중복계재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음.
- 아울러, 위원의 자격을 기정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전문가’에서 ‘기금운용 또는 청소·재활용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정 명시함.
- 안 제5조의2 제5항~제8항은 보궐 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과, 위원의 재척·회피·기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설함.
- 안 제5조의3 제3항, 제4항, 제5조의5 제2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조례」에 적용된다는 사유로 삭제함.

- 안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 게재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음.
-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당연 규정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음.

다. 종합의견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수집확대로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원활한 수집·선별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설치되었음.
- 마포구의 2021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을 보면
 - 아이스 팩 세척·배송 용역
 -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물품 구매
 -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투명페트병 및 비닐 별도배출 홍보물
 -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투명페트병 재활용 텀블러 가방제작
 - 재활용비닐봉투 제작 구매
 - 자원순환교육 행사 관련 위탁운영비와 교재 구매 등이 있음.
- 집행부에서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선별 처리를 위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존속기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본 개정조례안의 존속기한 연장 조문의 기타 개정사항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법률의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자료를 보면 기금의 지출액은 1억6,381만 8,860원이고, 조성액은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및 의료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사용료와 예치금의 이자로 8,694만3,771원으로 기금 수지가 맞지

않고, 사업 지출금을 제외한 9억9,881만3,537원은 예치금으로 금고에 보관하고 있음.

<표 1. 기금결산 총괄 내역(3년)>

(단위 : 원)

구분	전년도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2021년	1,075,688,626	△76,875,089	86,943,771	163,818,860	998,813,537
2020년	1,221,011,564	△145,322,938	90,733,782	236,056,720	1,075,688,626
2019년	1,167,706,582	53,304,982	258,536,092	205,231,110	1,221,011,564

- 이 같은 상황은 기금의 재원 조성과 목적 사업 지출이 한정적이고 대부분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금의 활용이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법정기금을 제외한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기금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출 사업의 목적성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기금의 존폐를 심의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기금의 사업들이 편성되어 의회 예산심의권의 확보와 동시에 효과적인 재정운영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 최근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폐지 지방자치단체 현황>

계	서울시 자치구	기타 시·군·구
9곳	양천구, 서초구, 성동구, 강서구	무안군, 고흥군, 완도군, 장흥군, 광양시

※서울시 자치구 중 기금 미설치 현황 :

<표 3. 지방자치단체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현황>

계	서울시 자치구	기타 시·군·구
13곳	마포구, 동작구, 종로구, 노원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강북구, 강남구	제주시, 봉화군, 진도군, 강진군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2-133 관련
----------	-----------

제안년월일: 2022년 12월 1일

제안자: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의2(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u>제2조의2(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8.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2.1.)

상정, 심사, 보류

제259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2.8.)

상정, 심사, 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맑은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24) 및 시행(’22. 3. 25)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5조)

- 2) 비전·목표·이행체계(안 제6조~제11조)
- 3)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사업(안 제12조~제18조)
- 4)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안 제19조~제23조)

3.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가. 조례 제정 배경

-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21.9.24.)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어 새로이 제정된 법률에 맞게 기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마포구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발판을 이루고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 조문 내용

- 본 제정조례안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제4장 23개, 부칙 3개 조문으로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구 및 구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장에서 제4장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본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지역 물관리 사업,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규정하고 있음.

<표 1. 조례안 구성 및 주요 내용>

장(제목)	세부 내용
제1장(총칙)	-목적, 기본원칙, 구와 구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감축목표 설정,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및 점검, 주요정책 심의,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지역 물관리 사업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다. 종합 의견

- 국제사회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지에 따라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을 근간으로 파리협정을 맺고 참여국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 · 이행하여 정부도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
-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등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었으나, 국제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음.
- 그동안 마포구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녹색성장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다가 새로운 법이 제정 되어 금번 조례를 제출하였음.

- 제정 조례의 법률적 구조 체계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법률의 정합성을 이루었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의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다만, 일부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구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조 목적에서 법령의 약칭¹⁾의 사용은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기술로서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 사용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 안 제3조~안 제4조에서 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사업자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책무를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 사유의 대한 설명과 기후위기와 녹색성장은 공공중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협력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안 제7조 제2항 제2호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안 제6조제2항에서 약칭 사용을 정하였기에 “감축목표”로 명시함이 옳바르고,
- 안 제11조제6호 마포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약칭 표현은 안 제9조에서 명기하여 중복표현이므로 삭제하고
- 안 제8조 및 안 제10조의 추진상황 점검은 행정행위의 중복된 명사로 판단되므로 “기본계획”과 “적용대책”의 연도별 점검 의무사항을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필요해 보임.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안 제22조 및 제23조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설립·지정·운영과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 제68조에서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 제69조제4항에는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기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향후 센터 설립·운영과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가 의회의 암묵적 동의로 여겨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기금 설치와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재원 확보 계획,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한 센터 설립에 관한 비용, 기금의 용도 등의 관한 자세한 내용, 아울러 기본계획 및 시행세칙이 마련되어 집행부의 설명이 있을 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아울러 법 제78조 제2항²⁾에서는 구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제정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문을 추가하여 마포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법률의 정합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법 제78조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2. 주요 수정(안) 현황>

집행부 제출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 -----	제1조(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 -----
<신설>	제4조의1(사업자의 책무)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생략)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생략) 2.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제11조(주요정책의 심의)----- 1.(생략) 2.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 3.~5.(생략) 6.제9조에 따른 마포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	제11조(주요정책의 심의)----- 1.(생략) 2.마포구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3.~5.(생략) 6.제9조에 따른 적응대책-----
제8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통합) 제8조(추진상황 점검)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추진상황 점검)	
<신설>	제24조(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

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 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2-131 관련
----------	-----------

제안년월일: 2022년 12월 8일
제안자: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는 약칭 사용 및 조문과 용어 수정
- 나. 필요한 조문 추가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2. 수정 주요내용

- 가. ‘사업자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4조)
- 나.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조항 통합(안 제10조)
 - 원안의 제8조와 제10조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
- 다. ‘의회 보고’ 조항 신설(안 제12조)
- 라.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조항 삭제(안 제23조)
- 마.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기타사항

-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이라 한다)는”을 “구는”으로 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의 수립 등”을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의 수립 등

제7조(중전의 제6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마포구”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마포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감축목표”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응대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추진상황 점검)”을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적응대책”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으로 한다.

-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호 중 “탄소중립비전”을 “마포구 탄소중립 비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마포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적응대책”으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을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사항과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앞에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6조(중전의 제15조) 제1항 후단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 중 “구청장이”를 “구가”로 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0조(중전의 제19조)제2항 중 “시행령 제60조제7항”을 “영 제60조제7항”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u> 및 같은 법 <u>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u>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 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구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이라 한다)</u>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u>----- ----- <u>시행령</u>----- ----- ----- ----- ----- ----- ----- ----- -----</p> <p>제3조(구의 책무) ① <u>구</u>는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u>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u></p>

제4조·제5조 (생략)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의 수립 등
<신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생략)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마포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마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6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삭제>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의 수립 등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8조제1항에 따른 마포구 -----

-----.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 6. (생략)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 6. (생략)

③ (생략)

제8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
3. ~ 6. (현행과 같음)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

② -----

1. (현행과 같음)
2. 감축목표 -----
3.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제>

다.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③ (생략)

제10조(추진상황 점검) <신설>

구청장은 적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11조(주요정책의 심의 등)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생략)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적용대책 -----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본계획 및 적용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 제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책-----.

제11조(주요정책의 심의 등) -----

-----.

1. (현행과 같음)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6. 제9조에 따른 마포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생략)

<신설>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신설>

제12조 ~ 제14조 (생략)

제15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2. 마포구 탄소중립 비전 -----

3. ~ 5. (현행과 같음)

6. ----- 적응대책-----

7. (현행과 같음)

제12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사항과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6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18조 (생략)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신설>

제19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 . -----

----- 모든 -----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가

----- .

제18조·제19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삭제>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60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 제22조 (생략)

제2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조제7항-----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삭 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8.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2.1.)

상정, 심사, 보류

제259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2.8.)

상정, 심사, 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맑은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마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2) 위원회의 운영(안 제4조)

3)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4)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가. 조례 제정 배경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점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환경 문제를 예방하며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조문 검토

- 본 조례안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13개,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마포구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표명하고 있고,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를 담고 있음.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민간 활동의 지원과 동시에 사업자 및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법제화 함.
- 안 제4조는 환경교육의 시책 등 전문가 의견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규정

하였음.

- 안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기초소양을 어릴 적부터 갖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공무원, 사업자의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원과 관내 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담고, 집행부 소속 공무원의 환경교육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과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2.1.6.)에 따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와 탄소중립 등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구민 모두가 환경보존을 실천하고 마포구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종전 「환경교육진흥법」보다 주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추진체계를 개선하며,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제정 목적 및 취지는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어 보임.
- 다만, 법령에서는 정부의 ‘국가환경교육계획’을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육계획 수립은 의무화 되고 있지 않음.

- 하지만, 마포구 환경정책에 따른 환경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마포구만의 환경교육계획이 필요해 보이므로,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 반영 등 환류 차원의 목적과 마포구 환경교육을 정밀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체 환경교육계획 수립이 필수불가결해 보임.
- 한편, 서울시 보도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향후 광역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광역-기초지역간 환경교육센터를 주축으로 환경교육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발표³⁾한 바 있음.
- 현재, 마포구도 2020년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음. 이는 환경교육의 증진을 위해 긍정적으로 보이나, 현재 시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환경교육이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운영되는 점과 향후 시비 지원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교육센터 운영이 타당한지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고받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2021.3.29. 뉴시스 “서울시, 2025년까지 자치구 전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 구축”

< 서울시마포구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 >

■ 지정 · 운영 현황

- 기관명 : (사)자연의벗연구소(센터장 : 박선하)
- 소재지 :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29, 2층
- 지정기간 : 2020. 6. 10. ~ 2022. 12. 31.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개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 사업대상 : 전 구민
- 사업내용 : 관내 풀뿌리 환경교육단체 네트워크 사무국 역할 추진

■ 2022년도 추진실적(2022. 7. 31. 기준)

- 2022. 5. : 사업계획서 심사·승인 및 사업비 교부(서울시)
- 2022. 8. ~ 12. : 사업추진(마포환경교육한마당 운영, 홍제천 생물다양성 탐사 등)
- 2022. 12.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제출

■ 소요예산(시비 100%)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	증감
목	세목			
계		10,000	10,000	-
민간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	10,000	-

< 타 자치구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 >

- '20년 지정(5개소) : 도봉, 마포, 서초, 영등포, 종로 ※지정기간: '22.12.31.만료
- '21년 지정(4개소) : 구로, 서대문, 은평, 중구 ※지정기간: '23.12.31.만료
- '22년 지정(4개소) : 중랑, 금천, 강서, 서대문2호 ※지정기간: '24.12.31.만료

[관 계 법 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2-132 관련
----------	-----------

제안년월일: 2022년 12월 8일

제안자: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 내용에 맞게 조문의 제목을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의 조문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자문”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자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u>위원회의 운영</u>) (생 략)	제4조(<u>위원회의 자문</u>) (현행과 같 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2.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22. 신종갑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2022. 11. 25.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22. 12. 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권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생명나눔 실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3)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4)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안 제5조)
- 5) 예우 및 지원 (안 제6조)

6) 표창 (안 제7조)

3.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가. 조례 제정 배경

-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의 이식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합법적인 장기 등의 이식과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뼈, 인대 등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급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제정조례안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7개 및 부칙 1개로서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의 설치, 예우 및 지원, 표창 등으로 구성되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구청장은 마포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홍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마포구청은 현재까지 등록기관으로 미지정되어 있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등과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 주체를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임.
- 국가에서는 1999년 장기이식법을 제정한 이후 사적 측면이 아닌 공공재로서 장기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모든 국민들이 장기 이식을 공정하고 분배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아울러 장기이식 비용에 대해 과거 비급여로서 수혜자에게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을 2017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수혜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2021년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등으로 활발하게 펼치고 있음.
- 하지만, 법 제정 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 희망등록업무 운영이 미흡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담당업무를 부여한 곳은 161곳, 전국 29% 65곳은 등록업무 조차 미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1. 서울특별시 자치구 장기기증희망 등록기관 현황〉

구분	계	등록기관 운영 자치구		미운영
		운영	기관명	
서울시	25	15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중랑구	10

- 또한, 전체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254개 중 49%, 12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증관련 조례 미제정으로 장기기증에 관한 업무 담당이 불명확한 것

이 현실임.

- 따라서, 본 제정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존중하여 유가족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위로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등록창구 여부와 기증자 예우 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의 차이로 기증자의 실질적 처우에 대한 편차가 많이 발생함.
- 따라서, 국민생각함 설문결과⁴⁾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의견등을 반영하여 우리위원회 및 집행부에서는 실질적 유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보건복지부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제도

1. 뇌사 기증자 지원한도액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액(만원)
뇌사자 장기기증자	기증한 경우	장제비	360
		진료비	180
		사회단체기부(유족희망시)	540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제비	360

2. 순수기증자 지원한도액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액(만원)
순수기증자	기증한 경우	정기검진 진료비 상한액	간장	70
			신장, 췌장, 췌도, 소장	60
	기증 못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상한액		150(1회한함)

※ 지방자치단체 예우사업 종류

1. 장례지원서비스(공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이용료 면제)
2. 추모공원설립

4)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2021.3, 국민권익위원회

3. 유가족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제공
4. 국가·공영시설 무료입장 및 주차시설료 면제 등
5. 장기기증 이식인과의 서신교류 등

[관 계 법 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추진
2. 조직의 기증·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
3. 조직기증희망자 표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산망시스템의 구축·관리주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